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제정 1972. 3.28 문교부령 제293호
제 1 차 개정 1972.11.10 문교부령 제306호
제 2 차 개정 1973.11.17 문교부령 제329호
제 3 차 개정 1975. 1.22 문교부령 제353호
제 4 차 개정 1975. 5.31 문교부령 제361호
제 5 차 개정 1979. 2.12 문교부령 제439호
제 6 차 개정 1980. 4.18 문교부령 제464호
제 7 차 개정 1981. 2.20 문교부령 제487호
제 8 차 개정 1982. 2.27 문교부령 제501호
제 9 차 개정 1983. 3.31 문교부령 제513호
제10차 개정 1984. 3. 7 문교부령 제524호
제11차 개정 1992. 6.12 문교부령 제617호
제12차 개정 1999. 7. 1 교육부령 제7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학"이라 한다)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협력학교의 임무) 협력학교는 방송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출석수업 기간 중의 강의 · 실험 ·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급편성,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
3. 방송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평가
4.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방송대학 총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 협력학교가 실시하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 수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업준비) ①방송대학총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 출석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방송대학총장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방송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방송대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학교의 방송대학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징계) ①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2. 3. 28 문교부령 제2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1. 10 문교부령 제3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1. 17 문교부령 제3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22 문교부령 제353호)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5. 31 문교부령 제3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2. 12 문교부령 제4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4. 18 문교부령 제4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20 문교부령 제4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7 문교부령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3. 31 문교부령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3. 7 문교부령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12 교육부령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 교육부령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 역 별 협 력 학 교

지 역 별	협 력 학 교
서 울 특 별 시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국민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부 산 광 역 시 및 경 상 남 도	부산대학교 · 경상대학교 · 동아대학교 · 창원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대 구 광 역 시 및 경 상 북 도	경북대학교 · 안동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인 천 광 역 시 및 경 기 도	서울시립대학교 · 동국대학교 · 인하대학교 · 인천교육대학교 · 아주대학교
광 주 광 역 시 및 전 라 남 도	전남대학교 · 목포대학교 · 순천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대 전 광 역 시 및 충 청 남 도	충남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강 원 도	강원대학교 · 강릉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충 청 북 도	충북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전 라 북 도	전북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제 주 도	제주대학교